정부 승인받은 공동행위도 불법!

공정위, 사업자단체 공동 서비스 가능 … 공동 수익관리는 불가능

각종 협회 등 동종·유사 기업들의 모임인 사업자단체가 정부 당국의 부당한 행정지도를 이유로 벌여온 가격담합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.

공정거래위원회는 <사업자단체 활동지침> 고시를 개정해 관계당국으로부터 지도·지시·권고 등을 받거나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회칙을 근거로 공동행위를 했더라도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면 처벌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.

가격, 수량, 거래조건, 거래 상대방의 결정 등 모든 사업활동은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할 때 사업자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.

종전 고시에는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 등에 따른 경쟁제한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공정위와 기업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.

따라서 지도·지시·권고·요망·주의 등 용어에 상관없이 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제한행위로 간주되며, 주무 부처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체의 회칙도 규제를 받는다.

상공회의소,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사실상의 중앙기관은 물론, 임원이나 종업원으로 구성된 친목회 성격의 단체도 사업자단체로 규정돼 부당공동행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. 또 대표자 외에 임원, 종업원, 대리인으로 구성된 단체, 각종 연합회, 중앙회, 회의소, 협회 지부 지회 등에 대해서도 각종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키로 했다.

이와 함께 공정위는 종전 고시에서 다소 불분명했던 내용들을 개정 고시에서는 <할 수 있는 행위>와 <하지 말아야 할 행위>로 나눠 새롭게 정리했다.

또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활동에 관해 직접적으로 구속하거나 구성원으로 하여금 관련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, 사업자단체가 다른 사업자단체나 구성원 이외의 사업자와 계약체결 등을 통해 사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.

구체적으로는 ▷거래조건·대금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▷생산·출고·수송·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▷거래 지역·거래 상대를 제한하는 행위 ▷생산·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·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·제한하는 행위 ▷거래 상품의 종류·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▷구성원들이 공동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하거나 수익을 공동 관리하는 행위 ▷다른 사업자를 방해해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은 불법으로 규정됐다.

또 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면 사업이 어렵게 하거나 기존회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신규 창업을 저지하는 행위, 신규 가입 때 거리제한을 하는 행위 등 각종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.

한편,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·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더라도 책임을 묻는다.

반면 ▷경제 시장동향 등 일반적 정보의 수집과 제공 ▷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 ▷사업자 활동을 구속하지 않는 공동서비스센터 ▷부당고객유인 방지나 부당표시광고의 자율규제규약 제정 ▷사업자간 규모에 따른 합리적 격차를 둔 가입비 및 회비 징수 등 18가지는 허용된다.

<Chemical Daily News 2003/01/06>